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34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노종면・이정헌・황정아

정동영 · 조인철 · 박민규

이훈기 · 김우영 · 최민희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.

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,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,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며,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.

또한,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,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9조, 제1 0조, 제13조, 제14조,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"을 "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에서"를 "제13조에 따른 이사 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임명 한다"를 "임명하되,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"로 한다.

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
- 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 대한 경우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
제13조제2항 중 "9명"을 "15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이사에

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"을 "이사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15명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·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. 이 때, 각 정당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점 이하 수가 가장 큰순으로 배분하되,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.

각 정당별 = 국회의원이 소속된 ÷ 60 추천인 수 정당의 의석수 ÷ 60

- 2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
- 3.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3명. 이 경우 노동조합이 2개 이 상인 때에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에 따른 교섭 대표노동조합에서 2명, 그 외 노동조합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 한다.

- 4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5.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
-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- ⑧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다만,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
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. 이 경우, 동의가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호 중 "사장ㆍ이사"를 "이사"로 한다.

- 제3조(이사 및 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후 2 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을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이사와 사장의 임기는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.
- 제4조 (집행기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장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장은 <u>방송통신위원회 위</u>	② <u>제13</u> 조에 따른 이사
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	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-
<u>를 받아 임명</u> 한다.	
③ 감사는 <u>방송통신위원회에서</u>	③ <u>제13</u> 조에 따른 이사
임명한다.	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
	<u>에서</u>
④ 부사장은 사장이 <u>임명한다</u> .	④임명하되,
	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동의
	를 얻어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③	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
	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
	<u>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.</u>
	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
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	<u>2. 「방송법」 제13조제3항 각</u>
	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	<u>경우</u>
	3.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
	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

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제13조(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

-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9명으로 구성하다.
- ③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이사에는 교육부장관이 추천하 는 사람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하다.

<신 설>

- 4.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 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
- - ① (현행과 같음)
 - -----15명---
- (3) ----이사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,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 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 15명-----
 - 1. 국회의원이 소속된 정당에서 추천하는 5명. 이 때, 각 정당 별 추천인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정수 (整數)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 하고,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숫 점 이하 수가 가장 큰 순으로 배분하되, 소숫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 다.

각 정당별 국회의원이 추천인 수 오속된 정당의 ÷ 60 의석수

2.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1명과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추천한 2명

3. 공사 노동조합이 추천하는
사람 3명. 이 경우 노동조합
이 2개 이상인 때에는 「노동
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
29조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
합에서 2명, 그 외 노동조합
에서 협의하여 1명을 추천한
다.

- 4.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5.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
- 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 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
-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⑥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<</td>서 신설>

<신 설>

⑦ ~ ⑨ (생 략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6. ~ 12. (생략)

체는 이사 추천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, 공모·의견수렴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<u>⑤</u>・<u>⑥</u> (현행 제4항 및 제5항 과 같음)

(7) -----

⑧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의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.

<u>⑨</u> ~ <u>⑪</u> (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)

제14조(이사회의 기능) ① -----

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 5의2. 사장·감사의 임명제청
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
 6. ~ 12. (현행과 같음)

 ② (생 략)
 ② (현행과 같음)

 제17조(직원의 임면) (생 략)
 제17조(직원의 임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 (신 설>)
 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임면한다. 이 경우, 동의가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

법」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

체협약에 따른다.